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준법령부가-313, 2021.03.04

▮질 의

• 자문법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고자 컴퓨터 부품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 제하여 부가가치세 확급신고함

질의내용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공급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시

위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 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02.)을 참고하시 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함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 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서면전자세원-750, 2021.02.18

▮질 의

•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21년 1월 1일부 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법령법인-1381, 2021.03.02

▮질 의

• 법인(금융회사등은 제외)이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 건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 당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 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 2. 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 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 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 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2021 · 12 · 22 www.eAnSe.com 13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 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법인-421, 2021,05,18

▮질 의

- (질의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 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 이 100%인 사업연도 판정기준
- (갑설)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 도의 감면율을 기준으로 판정
- (을설)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기 준으로 판정
-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비율 은 100%이나.
- 과세표준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면율은 100%가 아닌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 조의2제5항(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세제과-155, 2021.03.09

▮질 의

•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 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외 근무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시간외 근무 사실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